

<p>적극 추진 -연구보고서, 연구자료, 정보의 상호 협조 추진</p> <p>4) 연구원 정보화사업 □연구원 정보시스템 2단계 사업 추진 ○주요내용 -연구원내 각 부·실에 산재되어 있는 각종 연구관련 정보의 효과적인 공유와 지속적인 축적 -맵서버 구축으로 공간 및 비공간 자료의 공유 -연구정보자료를 대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 ○추진실적 -연구원 각 실별 수요조사 (7월 20일) -연구정보시스템 개발안 확정(9월) □홈페이지 기능개선사업 추진 ○주요내용 -이미지 및 화면 재설계를 통한 사용자의 접근 용이성 제공 -영문서비스 내용 보강을 통한 국제적인 정보교류 및 홍보 강화 -시스템 성능보강으로 서비스 속도 개선 ○추진실적 -개선안 수립 : 홈페이지 소위원회(5월~9월), 일반시민(7월~10월) -홈페이지를 통한 연구원 연구보고서 원문 공개(PDF화일: 9월 21일) -홈페이지 개선안 확정(10월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IV. 당면 현안업무</p> <p>1. 연구원 신청사 건립 □사업목적 연구시설로서의 특수성과 가능성을 고려하고 공무원교육원의 교육시설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립 □개요 ○위 치 :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(공무원교육원 부지내) ○건물규모 : 연면적 7,799㎡(2,395평), 지하1층/지상5층 ○사업기간 : 2000. 6. ~ 2002. 4 ○사업비 : 13,564백만원 (2001년도 : 11,774백만원)</p>	<p>○사용방법 : 신청사는 서울시 소유 건물로 건립하여 연구원에 무상임대 예정임. □2001년도 추진계획(계획공정의 85%) ○구 자료관 철거 : 2001. 1 ~ 2001. 2 ○실시설계 완료 : 2001. 2. 예정 ○공사 발주 : 2001. 2. 예정 ○본공사 개시 : 2001. 3. 예정 □향후 계획 ○2002년도 4월 준공, 연구원 이전 예정으로 건립 추진</p> <p>.....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설치및운영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□검 토 의 건 【 총괄부문 】 ○서울시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직업전문 교육시설의 입학자격 완화 및 훈련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려는 개정안으로, ○그 주요내용은 4개 직업전문학교중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엘림직업전문학교의 입학자격을 경기도 거주자중 경기도가 위탁한 자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비용은 위탁을 의뢰한 기관에서 부담하도록 개정 하려는 것임. 【 세부사항 】 ○엘림직업전문학교의 건립경위를 보면 1986년도에 서울시에서 대지를 매입하고, 사회복지법인 엘림복지회에서 건물을 신축한 후, -1991년도에 엘림복지회에서 동 건물을 20년간 즉 2011년까지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것임 ○위 학교는 1988년도 개교한 이후 1992년도 까지 국비 및 재단예산으로 운영하여 왔으나, 1993년도 학교명칭이 시립으로 변경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훈련비를 지원해 왔으므로, -1993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8년 동안의 훈련생 선발현황과 서울시에서 지원한 훈련비 내역을 살펴보면 별지 [표1, 표2]와 같음. ○ [표1] 에서 선발된 훈련생의 시·도별 구성비율을 보면 서울시민은 최소 61%에서</p>
--	---

최대 99%이고, 경기도민은 최대 39%까지 차지하고 있으며,

- [표1] 은 주민등록상의 주소만으로 작성한 자료이므로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시에 주소만 두고 있는 위장 전입자들을 감안하면 실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며,

○ [표2] 의 훈련사업비 부담내역을 보면, 서울시에서는 1993년부터 작년말까지 매년 최소 3억 2,500만원에서 최대 13억 7,058만원을 지원하였고,

-지난 8년간 총 75억 4,352만원을 훈련비 명목으로 지원하였음. 이는 총 훈련비용 140억 5,060만원의 약 54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서울시 지원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

-반면, 경기도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 차례 1억 8,975여 만원을 부담하였고 이는 총 훈련비용의 1%를 차지하며, 나머지 총 훈련비의 45%인 63억 1,732만원은 엘림복지회에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음.

○ 서울특별시장의 제안이유를 보면,

-위 학교 설립당시인 1986년 8월 시흥군수로부터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시 경기도 주민의 입학요구가 있다,

-서울시에서는 같은 해 10월 경기도민도 수용할 계획이고, 구체적인 인원 배정은 시흥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공문을 회시한 바 있으며,

-또한, 2000년 10월 17일 군포시에서도 엘림직업전문학교가 군포시에 소재한 관계로 교통, 소방, 청소, 환경, 지방세 비과세 등 각종 행정수요를 유발하고 있어 이의 처리비용을 군포시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군포시민도 입학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므로,

-서울시는 행정기관간의 약속이행 및 지역사회 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한 "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입학할 수 있다"는 조항을 완화하여 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 경기도민도 입학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.

○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,

-시립직업전문학교는 지역내 저소득 시민

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입학지원자격을 그 지역내의 주민에게만 주는 것이 합당하나,

-엘림직업전문학교의 경우 소재지가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하고 있고, 건립당시 행정기관간의 약속이행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지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도록 일정한 비율 범위내에서 경기도민에게도 지원자격을 주고 훈련비용을 위탁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, 이 경우에 서울시민과 경기도민(특히, 군포시민)의 비율, 그리고 훈련비용에 시설감각비용, 교육기자재 구입비용, 교사인건비 등도 포함시켜 적정수준을 위탁의뢰기관이 부담토록 세부적인 내용이 협정서나 시행규칙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.

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
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

□검 토 의 건

○ 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는 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될 당시('73.6.15)에 농가에 대하여 양곡대금 중 정부의 양곡관리기금에 납부하지 아니한 부분을 서울특별시장의 자체 경지정리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였으나,

○ 서울시의 경우 1974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가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농가에 양곡을 대여한 실적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
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농가대여양곡의전용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